

진도군 공고 제2024-449호

제295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95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진 도 군 수

1. 제295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1부.
2. 제295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각 1부.

목 록

안전번호	부 의 안 건	담당부서	비고
2024-37	진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홍 보 실	
2024-38	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홍 보 실	
2024-39	진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홍 보 실	
2024-40	진도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조례안	안전생활지원과	
2024-41	진도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안전생활지원과	
2024-42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2024-43	진도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민 원 봉 사 과	
2024-44	진도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 원 봉 사 과	
2024-45	진도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족 행 복 과	
2024-46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체육과	
2024-47	진도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문화예술체육과	
2024-4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세 무 회 계 과	
2024-49	진도 군관리계획(체육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문화예술체육과	

진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37
----------	---------

제출연월일 : 2024년 4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정책연구 용역 결과에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 여부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연구결과 확산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정책연구 용역 결과의 공개(제1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 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입법예고기간 : 2024. 3. 29. ~ 2024. 4. 18.)

7.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4. 4. 24. 원안의결

진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p>	<p>제12조(용역 결과의 공개) ----- ----- ----- ----- 다만,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p>

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38
----------	---------

제출연월일 : 2024년 4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여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 직무를 구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 위원장을 군수 위촉에서 부군수로 지정
 - 위촉직 위원 구성에 진도군의회 의원 추가
 - 위원의 회피 규정 신설

3. 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행정규제기본법」 등

5. 관련부서 의견: 의견 없음

6. 입법예고 사항: 2024. 4. 3. ~ 4. 23.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해당 없음

8.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2024. 4. 24. 원안의결

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명”을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민원봉사과장, 경제에너지과장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진도군의회의 의원

2. 규제혁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각자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모두가”를 “위원장이”로, “부군수가”를 “위원장이 미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무부서인 기획홍보실장”을 “주무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아닌 위원장 및”을 “아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u></p> <p>② <u>위원장은 부군수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부군수가 아닌 위원장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위촉할 수 있다.</u></p> <p>③ <u>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및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u></p> <p>④ <u>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⑤ (생략)</p> <p><신설></p>	<p>제5조(구성) ① ----- <u>위원장을 포함한 10명</u> -----</p> <p>-----</p> <p>-----</p> <p>-----.</p> <p>② <u>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민원봉사과장, 경제에너지과장으로 한다.</u></p> <p>③ <u>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u></p> <p>1. <u>진도군의회 의원</u></p> <p>2. <u>규제혁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p> <p><삭제></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u>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u></p>

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⑥ (생략)

제8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인 기획홍보실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관련 단체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
-- 위원회-----
-----.

② 위원장이 -----

--- 위원장이 미리 -----
-----.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적위원 -
----- 출석위원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주무부서 담당 팀장-----.

제10조(수당 등) ----- 아닌 -

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진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39
----------	---------

제출연월일 : 2024년 4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진도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 및 심판에 대한 양질의 대응을 위해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을 전남 평균에 맞게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도군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안 제6조)
- 현재 200,000원 ⇨ 개정 300,000원(↑10만원 인상)

3. 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의견 없음

6. 입법예고 사항: 2024. 4. 3. ~ 4. 23.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해당 없음

8.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2024. 4. 24. 원안의결

진도군조례 제 호

진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200,000원”을 “3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u>200,000원</u>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수당) ① ----- ----- <u>300,000원</u> ----- -----. ② (현행과 같음)

진도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조례안

의안 번호	2024-40
----------	---------

제출연월일 : 2024년 4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택시 기본차령을 최대 2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배기량 2,400cc 미만 기준)
 - 현행 기준 : 개인 7년, 일반 4년
 - 연장 기준 : 개인 9년, 일반 6년

3. 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5. 관련부서 의견: 의견 없음

6. 입법예고 사항: 2024. 3. 20. ~ 4. 9.(20일간) /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해당 없음

8.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2024. 4. 24. 원안의결

진도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의거, 진도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운행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6개월 기간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의 운행거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중인 택시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진도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4-41
----------	---------

제출연월일 : 2024년 4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진도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 진도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 목적, 정의, 무료이용 대상(안 제1조 ~ 제3조)
- 무료운행, 결손액 산정 및 지원(안 제4조 ~ 제5조)
- 사후관리(안 제6조)

3.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
- 「진도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5. 관련부서 의견: 의견 없음

6. 입법예고 사항: 2024. 3. 8. ~ 3. 28.(20일간) /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불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해당 없음

8. 비용추계서: 불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2024. 4. 24. 원안의결

진도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 및 「진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진도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버스 사업자를 말한다.
- 2.“이용객”이란 군내에서 제1호에 의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3.“결손액”이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의해 군내에서 운영중인 농어촌버스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무료 운행) 운수사업자는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에 대하여 무료 운행해야 하며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운행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결손액 산정 및 지원) ① 운수사업자는 결손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② 결손액은 당해연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결정한다.
-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결손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청구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42
----------	---------

제출연월일 : 2024년 4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영과 불필요한 별표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저축 신설(안 제16조)
- 나. 종전의 별표 5의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0(한 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다. 불필요한 별표 4를 삭제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4. 4. 3. ~ 4. 23. / 제출된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불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해당 없음

8. 비용추계서: 불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2024. 4. 24. 원안의결

조례 제 호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저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의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한 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3조(휴가의 종류) ①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신설></p> <p><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p> <p><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40%;">대상</th> <th style="width: 40%;">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출산</td> <td style="text-align: center;">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	<p>제13조(휴가의 종류)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저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별표4> 삭제</p> <p><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40%;">대상</th> <th style="width: 40%;">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출산</td> <td style="text-align: center;">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한 번에 들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한 번에 들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한 번에 들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진도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43
----------	---------

제출연월일 : 2024년 4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간편한 민원서식으로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조문의 변경 없이 별지 민원서식 정비 : 조례 2건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의 서식 설계 기준으로 변경('큰 글자 서식' 개편, 민원인 작성항목 최소화, 서식디자인 재설계)

※ 세부 개정 대상

조례명	개정서식	주요 정비내용
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1. 별지서식 조례 명칭 기재 - 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2. 글자크기, 글자체, 서식 디자인 변경 3. 민원인 작성 항목 최소화 - 가족사항 삭제 4. '날인'란에 '서명' 추가 - (기존)@ → (변경)서명 또는 인' 5.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문구 추가
진도군	농업기계	1. 별지서식 조례 명칭 기재

<p>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임대신청서 (별지 제1호)</p>	<p>-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2. 글자크기, 글자체, 서식디자인 변경 3. 중복 사항 삭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진도군수 삭제 4. '날인'란에 '서명' 추가 - (기존)㉠ → (변경)'서명 또는 인'</p>
--	---------------------------	---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2024. 4. 3. ~ 4. 23.(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 사유서)

9. 참고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4. 4. 24. 원안의결

진도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별지 제1호 서식</p> <p>【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04. 05.></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caption style="text-align: center;">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caption> <tr> <td style="width: 15%;">지급대상자</td>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15%;">생년월일</td> <td style="width: 15%;">전화번호</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r> <tr> <td></td> <td>주소</td> <td colspan="4"></td> </tr> <tr> <td rowspan="3">가족상황</td> <td>본인과의 관계</td> <td>성명</td> <td>생년월일</td> <td>동거여부</td> <td>직업</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급계좌</td> <td>은행명</td> <td>계좌번호</td> <td colspan="3">예금주</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4조제4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축하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p> <p style="text-align: center;">진도군수 귀하</p>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직업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p>별지 제1호 서식</p> <p>■ 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지급대상자</td>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15%;">생년월일(성별)</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r> <tr> <td></td> <td>연락처</td> <td colspan="4">주소</td> </tr> <tr> <td>지급계좌</td> <td>예금주</td> <td>은행명</td> <td colspan="3">계좌번호</td> </tr> </table> <p>「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지급대상자와의 관계:)</p> <p style="text-align: center;">진도군수 귀하</p>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p> </div> <p>본인은 장수축하금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증·초본 및 가족 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p>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직업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제2조(「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별지 제1호 서식</p> <p>【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농업기계 임대신청서(제7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접수번호</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처리기간 10일</td> </tr> <tr> <td rowspan="2">신청인</td> <td>주소</td> <td>성명</td> <td>생년월일</td> </tr> <tr> <td>전화번호</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3">임대농업기계</td> <td>농업기계명</td> <td>규격 및 형식</td> <td></td> </tr> <tr> <td>작업기계명</td> <td>규격 및 형식</td> <td></td> </tr> <tr> <td>수량</td> <td>작업종류</td> <td></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기간</td> </tr> </table> <p>「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진도군수 귀하</p>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p> </div> <p>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기계 임대 및 수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다만, 농업기계 임대 대상이 아닐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업기계 임대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p>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진도군수 귀하</p>	접수번호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임대농업기계	농업기계명	규격 및 형식		작업기계명	규격 및 형식		수량	작업종류		기간				<p>별지 제1호 서식</p> <p>■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농업기계 임대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접수번호</td> <td style="width: 15%;">접수일</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처리기간</td> </tr> <tr> <td rowspan="2">신청인</td> <td>성명</td> <td>생년월일(성별)</td> <td></td> </tr> <tr> <td>전화번호</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3">임대 농업기계</td> <td>농업기계명</td> <td>규격 및 형식</td> <td></td> </tr> <tr> <td>작업기계명</td> <td>규격 및 형식</td> <td></td> </tr> <tr> <td>수량</td> <td>작업종류</td> <td></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기간</td> </tr> </table> <p>「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진도군수 귀하</p>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p> </div> <p>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기계 임대 및 수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다만, 농업기계 임대 대상이 아닐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업기계 임대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p>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임대 농업기계	농업기계명	규격 및 형식		작업기계명	규격 및 형식		수량	작업종류		기간			
접수번호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임대농업기계	농업기계명	규격 및 형식																																																	
	작업기계명	규격 및 형식																																																	
	수량	작업종류																																																	
기간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임대 농업기계	농업기계명	규격 및 형식																																																	
	작업기계명	규격 및 형식																																																	
	수량	작업종류																																																	
기간																																																			

<개정 별지 서식>

■ 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지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주소	
지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진도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금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진도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44
----------	---------

제출연월일 : 2024년 4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진도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추가·변경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조례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도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제12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조례(제1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2024. 4. 3. ~ 4. 23.(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성별영향평가 검토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 사유서)

9. 참고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4. 4. 24. 원안의결

진도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45
----------	---------

제출연월일 : 2024년 4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혹서기·혹한기 등 응급상황 대비 마을 단위 경로당을 임시주거 시설로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내용(안 제6조제1호)
 - (신설) 바. 혹서기·혹한기 및 재난·재해 등 응급상황 대비 숙식 지원을 위한 냉·난방비, 양곡비 소요경비 등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4. 4. 3. ~ 4. 23.(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4. 4. 24.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혹서기·혹한기 및 재난·재해 등 응급상황 대비 숙식 지원을 위한 냉·난방비, 양곡비 소요경비 등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은”을 “경우”로 한다.

제8조 중 “및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및 「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노인복지시설 가. ~ 마. (생략)</p> <p><u><신설></u></p> <p>2. ~ 4. (생략)</p> <p>제7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항은</u> 지원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및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p>	<p>제6조(지원내용) ----- ----- ----- ----- ----.</p> <p>1. ----- 가. ~ 마. (현행과 같음) <u>바. 혹서기·혹한기 및 재난·재해 등 응급상황 대비 숙식 지원을 위한 냉·난방비, 양곡비 등 소요경비</u></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원금의 반환) ----- ----- -- <u>경우</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8조(준용) ----- ----- ----- ----- ----- 및 「<u>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p>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46
----------	---------

제출연월일 : 2024년 4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제15조 제1항
 - 제15조 제1항중 “도서관의” 를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로 변경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도서관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4. 4. 9. ~ 2024. 4. 29.(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4. 4. 30. 원안의결

진도군조례 제 호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서관의”를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① <u>도서관의</u>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진도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 ④ (생략)</p>	<p>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① 「<u>도서관법</u>」 제34조제2항에 따라 <u>도서관의</u>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진도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4-47
----------	---------

제출연월일 : 2024년 4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진도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진도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제1조 ~ 제4조) 조례 제정 목적 및 관련 정의 규정
- (제5조) 문화도시 추진 협력체계 구축
- (제6조 ~ 제10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
- (제11조 ~ 제13조) 문화도시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

3. 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등

5. 관련부서 의견: 의견 없음

6. 입법예고 사항: 2024. 4. 2. ~ 4. 22.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해당 없음

8. 비용추계서: 붙임

9. 참고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2024. 4. 24. 원안의결

진도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진도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진도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도군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성별·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진도군 문화도시 조성에 있어 군민이 주체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추진 전략과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추진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

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주체를 체계적으로 구축·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주체 : 제11조의 문화도시센터를 말하며, 문화기획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정식 조직으로 사업 수행을 총괄하는 지원조직
 2. 사업참여주체 : 진도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발굴·논의, 협의 등을 수행하고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실행자로 참여하면서 자율적, 탄력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조직
 3. 행정지원주체 : 문화도시 추진 부서 및 사업 연관 부서로 연계 협업을 위해 수시 논의 체제로 운영
- ② 제1항의 각 주체는 문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와 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진도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2. 문화, 예술, 교육, 복지, 관광, 도시재생, 경관, 해양,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 태만,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사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군의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위원에게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진도군 문화도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문화 관련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센터는 문화도시 구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지정 및 구성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연대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구성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문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재정지원)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
2. 지역문화인력 양성
3. 공간 등 시설 운영 및 시설 개선
4.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 지원
5. 문화 관련 군민이 참여하는 공모사업 및 기타 등
6. 국·내외 도시 및 문화 사회적 관계망 구축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안 번호	2024-48
----------	---------

제출연월일 : 2024년 5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진도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도시개발과)
-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건립(보건소)
- 고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립(농업기술센터)

3. 세부 내역 : 첨부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첨부

|| 목 차 ||

제안 번호	제 목	제 안 요 지	제안부서
1	전남형 만원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진도읍 남동리 131-26 - 지목/면적 : 전 / 3,442㎡(1,041평) - 대장가액(감정) : 1,855백만원 - 목 적 : 전남형 만원주택 건설 공모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도시개발과 (주거환경팀)
2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진도읍 교동리 128-1 - 규 모 : 지상4층(30실) / 1,500㎡(454평) - 금 액 : 5,000백만원(도비 2,400백만원 군비 2,600백만원) - 목 적 :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신축 	보건소 (보건정책팀)
3	고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군내면 송산리 747-7 - 규 모 : 지상1층 / 495㎡(150평) - 금 액 : 3,000백만원(군특 1,500백만원 군비 1,500백만원) - 목 적 : 고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및 자동시스템 구축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1. 심의주문

-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 심의

2. 제안이유

-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 백두아파트 기 위한 공동주택 건립 가능 부지를 취득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준공업지역인 진도읍 남동리 131-26 취득하여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취득내용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감정) (천원)	비고
계		1필지		3,442 (1,041평)	1,855,238 (1,782천원/평)	
1	매입	진도읍 남동리 131-26	전	3,442 (1,041평)	1,855,238 (1,782천원/평)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5. 주관과 의견

- 해당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건폐율 70%, 용적율 350%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임
- 주변 공동주택이 기 조성되어 있어 인·허가 및 지중화(전기, 통신, LPG 등) 공사를 추진하는 용이한 부지임.
- 층수 제한이 없어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부지라고 판단됨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건립

1. 심의주문

- 간호·복지 기숙사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심의

2. 제안이유

- 간호·복지 기숙사 건립으로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관외 유출 방지로 군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진도읍 교동리 128-1
 - 사업비 : 50억원(도비 24억, 군비 26억)
 - 규 모 : 지상 4층 / 30실 / 연면적 1,500㎡
 - 내 용 : 민간 간호·복지 시설 종사자 숙소 30실
- 취득대상

건물명	소재지	건축물 현황			사업비 (백만원)
		구조	연면적(㎡)	층수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진도읍 교동리 128-1	철근 콘크리트	1,500 (454평/30실)	지상 4층	5,000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5. 주관과 의견

- 간호·복지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숙사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됨

I

위치도



II

현장사진



고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립

1. 심의주문

- 토양환경개선과 지력을 증진하는 고체 형태의 유용미생물 생산 시설 건립 심의

2. 제안이유

- 농가 미생물제 수요증가에 따른 고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립
- 토양살포가 편리한 고체 유용미생물생산 시설로 작물재배 형태에 따른 맞춤형 미생물 공급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진도군 군내면 송산리 747-7
 - 사 업 비 : 30억원(군특비 15억, 군비 15억)
 - 규 모 : 지상1층(연면적 495㎡)
 - 내 용 : 고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및 자동시스템 구축 (배양실, 연구실, 기기실, 원료창고, 부품창고 등)
- 취득대상

건물명	소재지	건축물 현황			사업비 (백만원)
		구조	연면적(㎡)	층수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군내면 송산리 747-7	철골조	495 (150평)	지상1층	3,000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5. 주관과 의견

- 고체(과립형) 유용미생물 공급으로 농가 미생물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여 농가경영 비용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농약, 화학비료 등 농자재 사용저감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기반 조성으로 고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신축함이 타당함

대상지 위치도(위성)



현장사진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구분	제 목	신 청 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4-12호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도시개발과 (주거환경팀)	- 위 치 : 진도읍 남동리 131-26 - 지목/면적 : 전 / 3,442㎡(1,041평) - 대장가액(감정) : 1,855백만원 - 목 적 :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공모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가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4. 4. .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부(否)일 경우 사유
			가(可)	부(否)	
1	위 원 장	우 흥 섭			가
2	부 위 원 장	박 정 현	박정현		
3	위 원	정 기 문	정기문		
4	위 원	이 미 예	이미예		
5	위 원	정 동 조	정동조		
6	위 원	이 재 식	이재식		
7	위 원	이 애 순	이애순		
8	위 원	이 상 립	이상립		
9	위 원	김 미 경	김미경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구분	제 목	신 청 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4-14호	고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	- 위 치 : 군내면 송산리 747-7 - 규 모 : 지상1층 / 495㎡(150평) - 금 액 : 3,000백만원(군특 1,500백만원 군비 1,500백만원) - 목 적 : 고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및 자동시스템 구축	가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4. 4. .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부(否)일 경우 사 유
			가(可)	부(否)	
1	위 원 장	우 흥 섭			가
2	부 위 원 장	박 정 현	박정현		
3	위 원	정 기 문	정기문		
4	위 원	이 미 예	이미예		
5	위 원	정 동 조	정동조		
6	위 원	이 재 식	이재식		
7	위 원	이 애 순	이애순		
8	위 원	이 상 립	이상립		
9	위 원	김 미 경	김미경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구분	제 목	신 청 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4-13호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건립	보건소 (보건정책팀)	- 위 치 : 진도읍 교동리 128-1 - 규 모 : 지상4층(30실) / 1,500㎡(454평) - 금 액 : 5,000백만원(도비 2,400백만원 군비 2,600백만원) - 목 적 :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신축	가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4. 4. .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부(否)일 경우 사 유
			가(可)	부(否)	
1	위 원 장	우 흥 섭			중 감
2	부 위 원 장	박 정 현	박정현		
3	위 원	정 기 문	정기문		
4	위 원	이 미 예	이미예		
5	위 원	정 동 조	정동조		
6	위 원	이 재 식	이재식		
7	위 원	이 애 순	이애순		
8	위 원	이 상 립	이상립		
9	위 원	김 미 경	김미경		

진도 군관리계획(체육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2024- 49
----------	----------

제출연월일 : 2024년 4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안) 입안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 공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입안사유

- 2019년 12월(진도군 고시 제2019-65호) 소공원으로 결정된 진도읍 수유리 1422번지 일부 유희 부지에 생활체육 활성화 통한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코자 함

나. 계획의 범위

- 과업명 :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진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수유리 1422번지 일원
- 면적 : 소공원 38,880㎡ → 체육공원 45,889㎡ 증)7,009㎡

< 위치도 >



다. 주요내용

- 진도군 진도읍 수유리 1422번지 일원은 소공원으로 기 결정되어 있으며 금회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체육공원으로 변경

■ 공원 결정(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①	체육공원 1	체육 공원	진도읍 수유리1422일원	38,880	증)7,009	45,889	진고 제64호 2019.12.18	-

3. 추진경위 및 계획

- 2024. 4. 9. ~ 4. 12. :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입안
진도
군관리계획(체육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 관련부서 협의
- 2024. 4. 9. ~ 4. 23. : 진도 군관리계획(체육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2024. 4. : 진도군의회 의견청취
- 2024. 5. : 진도군계획위원회 심의
- 2024. 5.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2024. 6. : 실시계획인가 신청

4.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가. 현황분석

- 군관리계획현황
 - 대상지 소공원으로 군계획시설 결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농림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개발현황
 - 북측 해안, 동측 군내호, 남·서측으로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나. 변경(안)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①	체육공원 1	체육 공원	진도읍 수유리1422일원	38,880	증)7,009	45,889	진고 제64호 2019.12.18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①	체육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의 세분 변경 소공원9 → 체육공원1 · 면적변경 38,880㎡ → 45,889㎡, 증)7,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소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세분 변경하고 운동시설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군관리계획결정도(기정)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도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시설결정 규모

공원면적	공원시설		건축규모		비고
	시설면적(㎡)	비율(%)	건축면적(㎡)	비율(%)	
45,889	22,895	49.9	110	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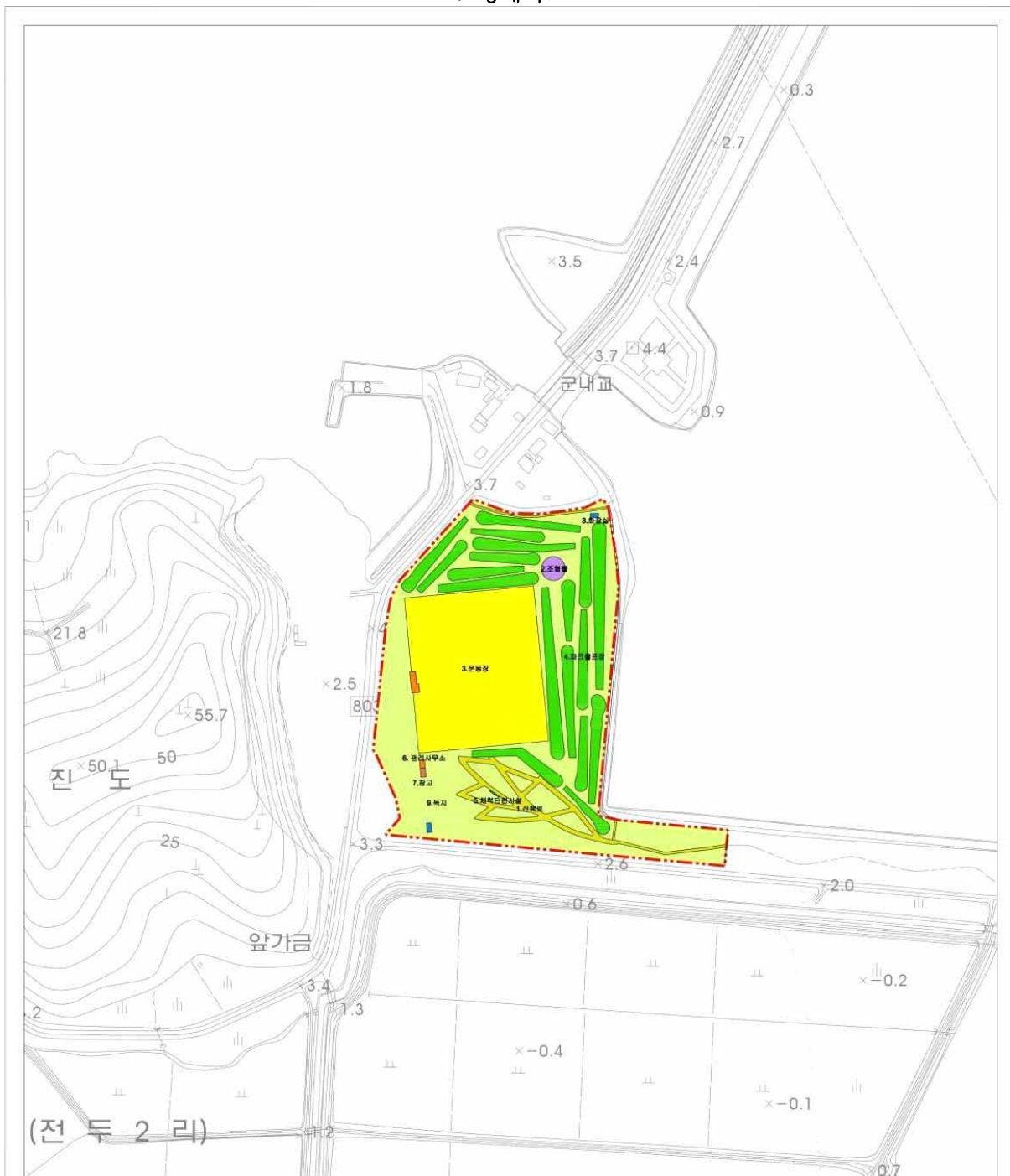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45,889.0	100.0	
기반시설	2,058.0	4.5	
조경시설	271.0	0.6	
운동시설	20,383.0	44.4	
관리시설	183.5	0.4	
녹지	22,993.5	50.1	

■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사

시설명	도면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성비(%)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합계	45,889.0	183.5	183.5	100.0	
도로	1	산책로	2,058.0	-	-	4.5	
조경시설	2	조형물	271.0	-	-	0.6	
운동시설		소계	20,383.0	-	-	44.4	
	3	운동장	12,068.0	-	-	26.3	
	4	파크골프장(페어웨이)	8,315.0	-	-	18.1	18홀
	5	체력단련시설	-	-	-	-	5EA 녹지내 설치
관리시설		소계	183.5	183.5	183.5	0.4	
	6	관리사무소	111.0	111.0	111.0	0.2	2개소
	7	화장실	27.0	27.0	27.0	0.1	
	8	화장실	45.5	45.5	26	0.1	2개소
녹지	9	녹지	22,993.5	-	-	50.1	파크골프장(그린)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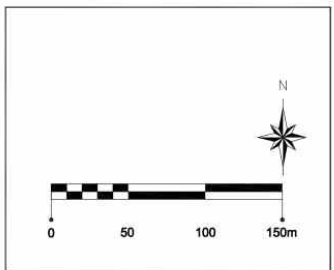
< 조성계획도 >



진도읍 수유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조성계획(안)도

범		례	
	공 원		운동장
	파크골프장		조형물
	산책로		참고
	관리사무소		녹지
	화장실		



6. 주민의견청취

진도군 공고 제2024 - 호

진도 군관리계획(체육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

진도군 진도읍 수유리 1422번지 일원 진도 군관리계획(체육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8.

진 도 군 수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진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나.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수유리 1422번지 일원
- 다. 면 적 : 소공원 38,880㎡ → 체육공원 45,889㎡(증 7,009㎡)
- 라. 사업시행자 : 진도군
- 마.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내용
 - ▷ 용도지역·지구·구역 : “변경없음”
 -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 경	①	체육공원 1	체육 공원	진도읍 수유리1422일원	38,880	증)7,009	45,889	진고 제64호 '19.12.18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체육공원	· 공원의 세분 변경 소공원9 → 체육공원1 · 면적변경 38,880㎡ → 45,889㎡, 증)7,009㎡	· 당초 소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세분 변경하고 운동시설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시설결정 규모

공원면적	공원시설		건축규모		비고
	시설면적(㎡)	비율(%)	건축면적(㎡)	비율(%)	
45,889	22,895	49.9	110	0.3	-

□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45,889	100.0	
기반시설	2,058	4.5	
조경시설	271	0.6	
운동시설	20,456	44.5	
관리시설	110	0.3	
녹지	22,994	50.1	

○ 총괄조서

시설명	도면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건축면적(㎡)		구성비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합 계	45,889	110	110	100.0	
도로	1	산책로	2,058	-	-	4.5	
조경 시설	2	조형물	271	-	-	0.6	
운동 시설	소 계		20,456	-	-	44.5	
	3	운동장	12,141	-	-	26.4	
	4	파크골프장 (페어웨이)	8,315	-	-	18.1	
관리 시설	소 계		110	110	110	0.3	
	5	관리사무소	84	84	84	0.2	
	6	화장실	26	26	26	0.1	
녹지	7	녹지	22,994	-	-	50.1	파크골프장 (그린)포함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동선명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	-	2,058	-	-	-
신설	3-1	2 ~ 3.5	209	664	진도읍 수유리 1421	운동장	산책로
신설	3-2	3.5	56	228	산책로3-1	산책로3-3	산책로
신설	3-3	3.5	64	227	산책로3-1	산책로3-4	산책로
신설	3-4	3.5	75	263	산책로3-1	운동장	산책로
신설	3-5	3.5	96	341	산책로3-1	운동장	산책로
신설	3-6	3.5	20	58	산책로3-1	파크골프장	산책로
신설	3-7	3.5	20	65	산책로3-1	파크골프장	산책로
신설	3-8	1.5	174 (375)	212 (565)	산책로3-1	진도읍 수유리 1424	산책로

※ () 전체 연장 및 면적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4. 4. 9. ~ 4. 23.(14일간)

나. 관계도서 :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061-540-3082)에 비치합니다.

3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4. 9. ~ 4. 23.(14일간)

나. 제출장소 :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다. 제출방법 : 공람 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한 서면 제출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061-540-3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부서 협의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진도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군 파크골프장 조성대상지 변경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뢰

군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진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관련법 검토 요청하오니, 검토의견서를 2024. 4. 1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진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 위치 : 진도읍 수유리 1422번지
3. 사업규모 : 약 19,126㎡ / 18홀
4. 대상 토지조서
 - 지목/면적 : 잡종지 / 38,880.2㎡
 - 토지이용계획 : 농림지역, 소공원,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불임 1. 검토조서 1부,
2. 위성 및 토지조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진도군수

수신자 안전생활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환경수질과장, 산림휴양과장

무팀장	정석래	체육지원팀장	김홍근	문화예술체육 전결 2024. 4. 9.
협조자		과장	김경숙	
시행	문화예술체육과-6474	접수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082	팩스번호	061-540-3099	/ dopak@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